

예 산 총 칙

2015년도 추경 1 회

제 1 조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80,090,000	17,402,700
일반회계		505,500,000	15,165,000
특별회계		74,590,000	2,237,700
공기업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치수사업특별회계 기반시설특별회계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46,250,000	1,387,500
	수도사업특별회계	17,750,000	532,500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8,500,000	855,000
	기타특별회계	28,340,000	850,200
	수질개선특별회계	4,144,000	124,32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2,800,000	84,000
	저소득주민주거안정기금특별회계	600,000	18,000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1,400,000	42,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300,000	9,000
	농공지구조성사업특별회계	2,300,000	69,000
	치수사업특별회계	14,996,000	449,880
	기반시설특별회계	500,000	15,000
	주거환경개선사업특별회계	1,300,000	39,000

제 2 조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3,2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공기업 특별회계 포함)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2,000,000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